

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알림

-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추진 -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올해 유럽과 주변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과 국내 가금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.
- 이와 관련 동 질병발생 예방을 위해 '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'에 추진할 방역대책을 전달하며 가금농가, 가금 계열화사업자 및 관련 축산시설 등에서는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.

'20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대책

1. 현 상황 및 전망

- ◎ (해외 상황) '20년 들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('20.8.19일까지 497건, 전년 동기 175건 대비 2.8배 증가)
 - 유럽은 전년 대비 33배(10→331건), 주변국*은 2배(72→142건) 증가
 - *대만 76, 베트남 57, 러시아 2, 중국 5, 필리핀 2
 - 이에 따라 올 겨울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*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대비 방역관리 강화 필요
 - *유라시아 북부 철새 번식지에서 국내도래 철새와 교차오염,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철새 등

최근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

- (유럽) '19.12월 이후 헝가리, 폴란드, 독일 등 8개국에서 H5N8형 AI 331건 발생
 -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헝가리(274건)는 원발 농장(2호)이 모두 오리농장이고 지역 내 전파 등으로 최근까지 지속 발생('20.6.3일 6건 발생)
- (중국·대만 등 주변국) '20.1월 이후 H5형 AI(N1,N2,N5,N6,N8) 142건 발생
 - 대만 내 발생이 연중 지속('20.1월 이후 76건)되고 있으며 H5N5형 발생 증가(39건)
 - 중국은 야생조류와 가금농가에서 5건 발생(H5N6형4건, H5N1형1건)
 - 필리핀은 '17.8월 마지막 발생 이후 메추리농장에서 첫 발생('20.3.16, H5N6형)
 - 몽골 내 야생조류(큰고니)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검출(4.21, 4.30, OIE 미보고)
 - 러시아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 2건 발생(8.4)
- (기타) 미국 12건(4.9, 칠면조, H7N3형), 호주 1건(8.7, 산란계, H7N7), 인도 17건(H5N1) 등

◎ (국내 상황) 고병원성 AI는 '18.3.17일 마지막 발생(야생조류는 '18.2.1일 마지막 검출) 이후 발생이 없으나, '20.6월부터 저병원성 AI(H9N2형) 지속 검출

- 전통시장과 가금농가(토종닭·산란계) 등에서 지속 검출(8.24일까지 25건), 유전자 분석 결과 과거 국내 검출 바이러스와는 다른 계열로 확인

* 저병원성 AI 검출현황: '16년 204 → '17년 5 → '18년 1 → '19년 0 → '20.8.24 25건

2. 세부 추진내용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AI방역상황실 운영 조정(9월부터) | 8 전통시장 방역강화 추진 |
| 2 가금 농가·시설 특별점검(10월 이전) | 9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강화 |
| 3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| 10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 추진 |
| 4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 | 11 백신접종팀 관리 강화 |
| 5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 소독 강화 | 12 살처분 인력 사전 준비 |
| 6 서해안 농가 생석회 벨트 추진 | 13 AI 발생 위험주의보 |
| 7 방역취약 임대농장 관리 강화 | 14 방역홍보 강화 |

1 AI방역상황실 운영 조정: (기존) 10월 ~ 2월 → (강화) 9월 ~ 2월

- (현행 및 문제점) 그 간 고병원성 발생 위험시기에 맞추어 AI방역상황실 운영기간을 10월부터 2월 까지 운영 중
 - 올해 유럽에서 발생이 급증하고, 중국·대만·몽골 등 주변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조기 유입가능성이 높아, 앞당겨 상황실 운영 필요

- (추진방안) AI 유입 여부를 조기 확인과 차단방역 추진이 필요해 9월부터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
 - 현재 가축방역상황실(ASF 심각 단계) 운영 중으로 AI 상황업무를 병행
 - * 방역본부 인력 1명 추가 파견을 통해 시특별방역 업무에 활용
 - 농가·축산관계자(수의사, 계열사, 사료업체 등) 등에 대한 신고체계 운영

◆ 가금농가·가금산업 관계자(수의사, 계열업체, 사료업소 등) 의무 신고

- (폐사율) 동일 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대비 2배 높게 폐사율 증가시
- (산란율) 동일 축사에서 이전 일주일 일평균 산란율 대비 3%포인트 이상 산란율 저하시
- (기타 임상증상) 닭(줄거나 청색증 관찰), 오리(녹변, 신경증상 관찰)
 - ※ 가금사육농장주는 축사별(동별) 일일폐사일지 및 산란일지(알을 생산하는 가금농장)를 매일 작성(별지 제12호 서식)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◆ 신고 기관

-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(☎ 1588-4060), 시·도 가축방역기관(보건환경연구원, 축산위생연구소, 가축위생시험소, 축산위생사업소, 축산진흥연구소, 동물위생시험소 등), 농림축산검역본부(☎ 1588-9060), 농림축산식품부(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)
 - ※ 의심축 신고상황보고체계: 읍·면·동→시·군→시·도→농림축산검역본부(농림축산식품부)

2 가금 농가 및 시설 특별점검(10월 이전)

- 축산국, 검역본부 및 지자체 방역자원을 총동원하여 위험시기 이전 농가와 시설 등을 일제점검하여 방역취약 요인 개선 추진
- ① 방역 취약농가/시설 특별점검 추진
 - 점검기간: '20.8.24.~9.25.(5주간)
 - 점검체계: 자체점검(~9.11, 3주간) → 보완지시(~9.18, 1주간) → 현장점검(~9.25, 1주간)
 - 대상: 총 3,004개소(방역 취약 가금농장 2,031호, 가금 관련 축산시설 973개소)
 - (가금농장) ①AI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방역 미흡농장(~8.19.까지 277호), ②임대농장(273호), ③전통시장 거래농장*(212호), ④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(398호), ⑤경작겸업 농장(770호), ⑥종오리 농장(101호)
 - (축산시설) ⑦가금류 도축장(50개소), ⑧식용란 선별포장업*(443개소), ⑨거래상인 계류장*(166개소), ⑩분뇨처리·비료제조업체(314개소)
 - 점검기관: 지자체, 농식품부*(검역본부)
 - * 농식품부(검역본부)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
 - 기관별 점검방법: ▲ (지자체) 점검대상 농가/시설에 사진을 포함하여 확인, 미흡한 곳에 대해 현장점검 ▲ (검역본부)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되는 지자체(시군)를

우선적으로 점검

* 농식품부(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)는 필요시 가금농가와 지자체 등 불시점검

- 주요 점검항목 : 방역/소독시설 집중 점검, 방역 준수사항은 지도

* 가금농장 전실·방역실 등 필수 방역시설은 단순 구비 여부 이외 축사 전용장화구비 및 소독여부, 축사와 구획 여부, 손소독여부 등 차단방역을 위한 실질적 필요사항을 추가 지도·점검

◆ 가금 사육농가 주요 점검사항

- (전실·방역실) 발판소독조 운영, 교체 장화·방역복 비치 여부, 손소독 장비 구비 위주 점검
- (CCTV 점검) CCTV 운영 여부 점검
- (난좌 관리) △산란계 농가는 1회용 난좌 사용토록 권고, 플라스틱 난좌 사용농가 소독 확인, △종축장(종계, 종오리)은 가급적 1회용을 사용 권고, 재활용 난좌(플라스틱 등) 사용시 반드시 매 회 소독하도록 지도
- ※ 부화장에서 반출시 마다소독 실시 및 소독필증 발급 조치(점검시 확인)

◆ 가금 관련 시설 주요 점검사항

- (식용란선별포장업) 전국 식용란 선별포장업(443개소)에 대해 소독·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실태 조사(지자체, 검역본부)
- 계란운반차량, 파레트·합판 등 운반용기 소독여부 확인
- ※ 식용란수집판매업 기준 미달시 과태료 처분, 개선 지도 실시, 농장 내 위치한 선별포장장에 대해서는 타 농장 식용란 반입금지

②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장 관리강화

- 외국인근로자 관리 실태 파악(농가, 근로자 등) : 외국인근로자의 국적, 전화번호, 거주형태(농장내외) 등 파악
- 방역준수사항 및 개인위생·주의사항(뉘시 방지) 등 홍보 추진

③ 기타 가금 산업시설 점검

- (사료공장·부화장) 방역 및 소독시설 일제점검 추진
 - 소독·세척, AI 검사, 소독기록 작성 등 적정 여부 점검 실시
 - ※ 지자체에서는 월 1회 및 검역본부 분기별 1회 이상 점검
- (왕겨판매업체) 왕겨판매업체 일제 조사 및 점검(지자체)
 - 소독시설 운영, 운반차량 GPS 장착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 여부 등
 - * 보관 및 운반상태가 불량한(아생조수류 침입이 용이하게 보관, 비 등에 젖어있어 병원체 오염 가능성) 업체는 생산자협회 등에 공지(폐널티)

④ 중앙 AI특별방역단 운영(검역본부)

- 검역본부 중심으로 특별방역단을 편성하여 지자체의 항원검출 지역 소독, 차량 통제, 주변 농가의 자체 소독 및 차단방역 조치 여부 확인 점검(9월부터)

* 발생시, 신속한 현장 지휘·방역조치 및 점검 등 수행

3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시행(9월~)

- (현행 및 문제점) 지난 동절기('19.11.~'20.3.)에 전체 철새도래지 96개소 중 과거 항원 검출지 중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84개소에 대해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 운영
 - GPS 단말기를 활용해 특정 구간 진입 시 차량 우회 등 메시지 송출
 - * 법제화가 되지 않아 진입금지 지역에 대해 출입시 처벌이 없음

- (추진방안) 과거 AI 항원(H5·H7형) 검출지점 뿐 아니라, 철새 다수 서식지점과 다수농가 소재 지역의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의 축산차량 통제 추진
 - 출입통제 지역 : 234지점 352.3km('19년 대비 82.9% 증가↑)

* (8월) 시범운영 및 점검, 관련 기관 홍보 → (9월) 공식 적용

항목	기존	확대
통제구간	○ 전국 84지점 192.6km	○ 전국 234지점 352.3km('19년 대비 182.9%)
도래지별 통제지점수	○ 도래지별 1개 지점 설정 * 항원검출 지점이 다수인 4개 도래지 (곡교천, 동진강, 무심천, 전위천)는 2개 지점	○ 도래지별 위험도 및 도로 사정에 따라 통제지점을 세분화 * 1개 도래지당 최대 8개 지점
통제지점 선정기준	○ 과거 항원(H5·H7형) 검출지점 중심	① 과거 항원(H5·H7형) 검출지점 ② (추가) 철새 다수 서식지점 ③ (추가) 인근 다수농가 위치 지점

4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

- (현행 및 문제점) 우리나라 철새는 9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하나, 10월부터 본격 유입되어 야생조류 AI 분변검사 등을 추진 중임
 - 예년 비하여 유입가능성이 높아 조기 확인 필요성이 증가
- (추진방안) AI 예찰 강화를 조기 추진 및 드론 등 최첨단 장비 활용을 통해 예찰역량 강화 추진
 - (조기 실시) 환경부와 협력하여 조기 예찰 추진(당초 10월 → 강화 9월)
 - (방법 강화) 철새 드론 예찰팀(9팀 운영)을 구성 및 운영(9월~12월)하여 철새 예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확인해 예찰 실효성을 제고 추진

* 드론을 활용 광범위한 철새도래지(하천, 호수 등) 지역의 야생조류 분포상황을 조사·분석하고 효과적인 시료채취(포획) 지점 선정 및 폐사체 관찰범위 확대

- (검사 물량) 검사물량을 지난해 대비 8% 이상 확대 추진
 - * (18/19) 21,649건 → (19/20) 23,406 → (20/21) 25,278(8% 증↑)
 - * 9월부터 조기 추진

5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 소독강화

- (현행 및 문제점) 전국적으로 철새가 다수 서식하는 103개 철새도래지이며, 주변 지역 농가는 발생 위험이 상존,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
 - * (위험도별) 고위험 20개소, 중위험 59개소, 저위험 24개소(7개소 신규 추가)
- (추진방안) 철새도래지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, 주변 농가에 대해 생석회 도포 등 소독실태를 주기적 점검 추진
 - 철새도래지(103호)에 대해서는 9월부터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, 철새 도래 확인시부터 매일 소독실시 확인

6 서해안 지역 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추진

- (현행 및 문제점)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사육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수류 침입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상존
- (추진방안) 철새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지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구 및 축사 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실시 등 차단방역 추진
 - (생석회 벨트 지역) 전남북, 충남북, 경기도내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생석회 벨트(농가 진입로 및 축사 둘레) 구축(9월내) 추진
 - * 동절기 동안 생석회 벨트가 지속 남아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속도포
 - * (지원방안) 자가구매 / 농협중앙회 비축생석회 / 지자체 지원

7 방역취약 임대농장 관리 강화

- (현행 및 문제점) 임대농장(19년 조사 기준, 전국 678호)은 방역시설이 미흡할 경우 시설·장비에 대한 보완에 소극적으로 방역에 취약 가능성이 높음
- (추진방안) 9월 중 사전 점검(지자체) 실시와 미흡사항 확인시 조기 보완 조치, 위험시기에 주기적 관리 추진(주 1회 방분 전화예찰·소독 등 확인)

8 전통시장 방역강화 추진(휴업·소독 강화, 입식전 신고, 전담공무원)

- (현행 및 문제점)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가는 방사사육, 사육시설의 방역취약으로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음
- (추진방안)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가축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한 일제 휴업과 세척·소독 실시(월 2회, 지속)
 - (계류장) 입식 전 신고 적용 및 가축방역관 세척·소독 확인
 - (가금판매소) 가금 판매 장소 소독 및 이동승인서 확인(전담 공무원)
 - * 초생추·중추유통시(5일장) 지자체사전 판매 신고 및 판매장소 지정

9 전국 거점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강화

- (현행 및 문제점)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해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소독실시 및 확인 필요
- (추진방안) 전국 지자체에 거점소독시설 및 사료공장 등 민간 소독시설의 운영을 강화하고 가금농가에 대해서 소독 확인을 강화 조치(9월 이후)
 - ※ (예년) 선별적 및 발생시 운영 → '20 전국 조기 추진
 - (거점소독시설) 전국의 가금 사육농가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조치 (현재 ASF 관련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운영 중)
 - 전국 지자체 운영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(8월 중, 검역본부) 추진과 주기적 관리 강화 추진
 - * (지자체) 주 단위 거점소독시설 운영사항관리(9월 이후)
 - * 생축 및 분뇨 차량에 대해 별도 소독방안 운영 방안 수립 추진
 - (민간 소독시설) 사료공장, 도축장, 분뇨처리장, 부화장, 식용란선별포장업* 등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토록 조치
 - *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차량, 파레트·함판 등 계란 운반용기를 포함 소독
 - *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(고시) 소독필증 사용
 - ※ (민간 시설운영 및 관리) ▲(민간시설) 축산차량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, 소독대장 및 소독약 사용대장 작성, ▲(지자체)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해 소독대장 및 소독약 사용대장(매입증거 서류 확인 등) 점검 등 확인(주회)
 - (가금 사육농가)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거점소독시설과 민간 소독시설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을 확인 및 보관토록 조치

10 계열사 책임방역 강화 관리(9월~)

- (추진방안) 계열사의 소속 농가에 대한 책임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
 - 계열사 소속 농가의 의심증상을 확인시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
 - 위탁농가 계약시 농가의 방역시설 점검과 미흡시 개선 후 체결
 - 도축 출하 전 상차반에 대한 방역교육 및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
 - * 상차반 인력에 대해 농장진입전 교육을 실시, 마스크·장갑·방역복을 반드시 지급, 인력 운송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
 - * 상차반방역교육대상 작성비치(교육일자, 참석자, 교육내용 등)(1년간)
 - 계열사 소속 농가의 방역 미흡내역을 계열사에 통보 관리 조치
 - 계열사(본사 및 도축장)에 대한 방역평가 실시(9월~)
 - * 상차반교육등 조치사항, 소속농가방역교육 지도, 계약시 방역미흡농가계약여부, 도축장방역시설 및 운영사항등
- ※ 법 이행 미흡 및 방역추진사항 불이행 확인시 해당 계열사 방역평가에 반영

11 백신접종팀 관리 강화

- (현황 및 문제점) 종계 및 산란계 농가의 예방접종시 접종팀에 의해 농장간 전파 사례가 있어 이를 위해 백신접종팀 관리 강화
- (추진방안) 백신접종 신고 및 인력 이동과 농장 출입시 소독강화
 - 백신접종 인력 조사 추진
 - 백신접종시 해당 시군에 사전 신고(7일전) 및 AI검사, 이상이 없는 경우 접종 허용(14일간 유효)(단, 외부 접종인력 활용시에 한함)
 - * 백신접종팀은 작업 전·후 샤워 및 신규방역복 또는 작업복 착용
 - 백신접종 인력 이동차량은 GPS 장착 의무 이행

12 살처분 인력 사전 준비

- (현황 및 문제점) 올 동절기 대비하여 사전에 살처분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조기 추진 (코로나 대비 대면 교육 이외 방법 활용)
- (추진방안) 비상시 대비하여 동절기 이전에 지자체별 살처분·매물 전문업체와 계약, 관내 공무원·관련 업체 등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 조치

13 축종별·시설별 교차오염 방지 대책

- ① 산란계·종계 농장

- (사료차량) 산란계·종계 농장은 타 축종과 구분된 전용차량으로 사료 반입(특히, 토종닭 농장 공급 차량과 구분)
- (노계출하) 도축장에 한하여 출하 허용, 전통시장 등에 출하금지
- (종란소독) 토종닭 종계장(30개소)은 종란 반출시 농장내에서 훈증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 후 반출, 부화장은 토종닭 종란 소독필증 확인

② 토종닭·오리·육계 농장

- (사료 운반차량) ▲(토종닭 농장) 사료를 반입하는 차량은 사료공장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(3단계 소독) ▲(오리농장) 닭 농장에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 출입금지
 - * 토종닭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강화(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)
- (전통시장 가금유통) ▲ (육계농장) 전통시장 거래상인에게 가금 판매금지, ▲ (축종 혼적금지) 거래상인은 닭·오리를 혼합하여 운반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
 - *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에 대해 휴업 및 세척·소독(월2회)

14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

- (현행 및 문제점) 철새 도래상황에 따라 철새정보알림시스템* 추진
 - * 경보단계: 도래단계→밀집단계→철새 주의단계→해제 단계
 - 옮겨울 발생 위험성이 증가해 사전 대비 강화를 위해 위기 징후 확인과 정보 전달체계 구축 필요
- (추진방안) 옮겨울 주변국의 발생 정보 등 추가 위험 정보를 포함하여 「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」 발생 운영
 - 철새 도래·예찰결과 분석 및 주변국 발생 상황 등의 위기 징후를 수시 파악과 농가·지자체·가금시설 등 방역주체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(검역본부)

- (야생조류) 야생조류에서 H5 또는 H7 혈청아형 바이러스 검출
- (해외발생) 겨울철새 유입시기(10월~12월)에 겨울철새의 중간 기착지 또는 월동지(중국 산둥반도 이남, 일본, 대만 등)의 HPAI 발생시
 - *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유전형(H5N2, H5N5, H5) 이외 발생시

15 방역홍보 강화(위험 징후, 경각심 고취)

- (추진방안) 동절기 대비하여 농가 등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도자료, 전문가 기고, 지방신문 및 전문지 등을 활용해 농가와 관련 업소 등에 적극 홍보 추진